

부산직할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2. 11. 11

총무사회산업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년 11월 3일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2년 11월 4일

다. 상정일자 : 제20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사회과장 정형진)

가. 제안이유

- 이웃돕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이웃돕기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 조례를 제정코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기금의 재원은 이웃돕기 성금 및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함
- 기금은 세입·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그 집행은 일반회계에 준함
- 지원대상은
 - ①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
 - ② 불우보훈대상자 및 재해이주민
 - ③ 가두직업 청소년 및 자활단체
 - ④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취약지 근무경찰, 군인
 - ⑤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민 또는 단체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이 조례제정 이전의 이웃돕기 성금은 세입·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던 것을 자금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위원	답변자	질의내용	답변내용
백성수위원	정형진 사회과장	○'92년도 이웃돕기 기금 총 수입액, 현재 잔액 및 잔액에 대한 계획과 기금의 관리부서는?	○수입액 103,149천원, 지출 83,227천원, 현 잔고 19,922천원이며, 연말에 유사영세민 등에게 지원할 계획이며, 기금은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음.
		○경찰, 군인이 지원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유는?	○시의 준칙에 의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군·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으나 집행시 고려하겠음.
장창조위원		○지원대상자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게 예산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경우 이중지원 이유?	○예산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최소 생계비에 불과하므로 연말, 명절 등에는 필요시 지원 불가피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12명, 찬성 11명, 기권 1명)